영등포구의회 제142회 제2차정례회

『200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』

檢討報告書

2008. 12. 4.



『200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』

檢討報告書

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"200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"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🔲 제안이유

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, "200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"을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입니다.

🔲 주요내용

영등포구 양평2동주민센터 건립 부지 매입

- 위 치 : 영등포구 양평동4가 172-1

- 소 유 자 : 서울특별시

- 대지면적 : 450.6 m²

- 소요예산: 1,459,000천원

🔲 검토의견

●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양평2동주민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청사부지가 1975년에 건립된 노후 된 건물로서 사용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, 서울특별시 소유의 체비지로 그 동안 5년간 무상 대부계약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2008년 2월 20일 대부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 연장 불허및 반환 요청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

매입할 부지는 우리구 양평동4가 172-1에 위치해 있으며 토지면적 450.6㎡로, 취득예정가격은 14억5천9백만원입니다.

이 부지는 현재 서울특별시 소유 토지이며, 취득방법은 10년 분할납부, 년4%의 이자를 적용하였습니다.

양평2동주민센터 신축은 이 지역 주민들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며, 주민과 밀접한 건물의 신축인 만큼, 추진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8. 12. 4.

보고자:권 오 운

<u>관 계 법 령</u>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10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-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7.5.11>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(매입, 기부채납, 무상양수, 환지, 무상귀속, 교환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 <개정 2008.4.18>

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경우에는 10억원 이상)인 재산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"개별공시

지가"라 한다)로 하고,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「지방세법」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다만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.

- 2.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 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)인 재산
-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·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8.4.18>
- 1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
- 2. 「도시개발법」에 의한 환지
- 3.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
- 4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처분
- 5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
- 6.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
- 7.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ㆍ처분
- 8. 삭제 <2008.4.18>
- 9.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·처분 10. 「지방세법」에 의한 물납
- 11.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·처분
- 12.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·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·처분
- 13.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·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·처분
- 14.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물 또는 공작물의 대체설치
- ③제1항에서 "1건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- 1. 동일한 취득·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
- 2.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
- 3.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·처분하는 경우
- 4.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·처분하는 경우
- 5.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·운영 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·처분하는 경우
- 6.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·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. 다만, 공사 중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
-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 체에 시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